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표기 의무화 등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7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추가 등	2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표시 의무화	4
※ 참고자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14
※ 참고자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e-라벨 활용(안)	16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26일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추가 등

개정안은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 <u>임산부, 장애인 등</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생략)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	3. ----- ----- ----- ----- <u>임산부, 장애인 등</u> -----

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관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¹⁾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화학제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안전기본법」에서도 장애인을 배려가 필요한 안전취약계층²⁾으로 두고 있음.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2)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표시 의무화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점자 표시기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며, 점자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점자 표시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35조 및 제6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8항·제9항----- <u>한글표시기준·점자등표시기준</u>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생략)

② (생략)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
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
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생활화학제품

가. ~ 다. (생략)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
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신설>

-----.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8항·제9항-----한글표
시기준·점자등표시기준-----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한글표시
기준-----

마. 제10조제9항에 따른 점자등표
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2. ~ 4. (생 략) ②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u>생활화학제품</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 1.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각장애 인 등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일상 생활공간(가정·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가 우려되어 지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
품”)³⁾은 제조·수입 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또는 승인 후 시장
에 유통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
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
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현황 조사	관리대상 품목 지정 및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마련	안전·표시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 (신고 후 시장 유통)	사후관리 (시장모니터링 등)
▲ 실태조사(법§7) ▲ 위해성평가(법§8)	▲ 안전·표시기준 마련(법§9~10) ▲ 안생품 지정 고시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시험기관) → 제품정보 등 신고 후 판매(기업) * 현행 유효기간 3년	▲ 유통제품 조사 ▲ 법률 위반 시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조치 등 명령, 형사고발

※ 제품의 형태, 용법에 따라 위해도가 다르게 평가되어 단일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대상으로 관리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품 유해성·효과 등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이에 따라 현재 안생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신고대상 35개, 승인대상 8개 등 총 43개이며, 제품 수는 2025년 11월 기준 19만여개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생품 품목]

1. 세정제	16. 방향제	31. 초
2. 제거제	17. 탈취제	32. 습기제거제
3. 세탁세제	18. 물체 염색제	33. 인공 눈 스프레이
4. 표백제	19. 물체 도색제	34. 공연용 포그액
5. 섬유유연제	20. 자동차용 워셔액	35. 목재용 보존제
6. 광택 코팅제	21. 자동차용 부동액	36.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승인
7. 특수목적코팅제	22. 인쇄용 잉크·토너	37.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8. 녹 방지제	23. 인주	38. 보건용 살충제 승인
9. 윤활제	2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39. 보건용 기피제 승인
10. 다림질보조제	25. 미용 접착제	40.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승인
11. 마감제	26.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41.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12. 경화제	27. 살균제	42.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13. 접착제	28. 살조제	43.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14. 접합제	29. 기피제	
15. 경화촉진제	30.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또한, 현행법은 안생품에 대해 소비자가 화학물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항을 제품 포장이나 겉면에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정하면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사업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⁵⁾.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개정안은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생품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점자 등의 표시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점자 표시는 인쇄된 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바, 안생품 중에서는 제품 자체의 크기가 작은 제품(표시면적 50cm² 이하 제품)이나 초 등과 같이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표시와 점자표시 병행이 어려운 제품⁶⁾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점자 등의 표시기준 준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⁷⁾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점자 등의 표시기준은 표시가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점자 표시를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은 실효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현재 크기가 작은 제품의 경우, 품목, 제품명, 신고번호만을 제품에 기재하고 그 외 표시사항은 별도의 첨부서류 등을 통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7) 아울러, 점자 표시를 하더라도 제품의 재질이나 사용 특성 및 유통 과정에 따라 표시가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음.

둘째,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자 표시의 의무화에 앞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표시 등의 대체 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소한의 안전정보⁸⁾만 점자로 표시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연간 4조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⁹⁾되는데, 이는 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 크기 및 산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¹⁰⁾이며, 이를 통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 방안을 도입·검토 예정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의 인생품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장품·식품 등 소비자 안전이 중시되는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점자 등의 표시를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자의 재량으로 규정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방식은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 품목, 제품명,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한정

9) 산출식 : ①신고·승인 제품수(190,121개) × ②제품당 평균 제조·수입량(8,392개) × ③제품 1개당 표시의무화시 비용(2,610원)

① 2025. 11월 기준,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 수
② 같은법 제49조에 따라 제조·수입자는 2년마다 제조·수입량을 보고해야하며, '23년 자료로 산출
③ 제품별 점자 표시사항(품목, 제품명, 사용상주의사항) 문구수(261개) × 문구 1개당 점자 인쇄 비용(10원, 한국점자인쇄에 비공식 문의 결과)

10) 사업명: 화학제품 안전관리(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지원 - 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2026년 예산: 1.5억원

[제품의 점자 등 표시에 관한 입법례]

법령	조문 내용
화장품법 (제10조)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u>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u>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u>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u>
의료기기법 (제23조의2)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u> 1.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u>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행위</u>

참고로, 관계기관¹¹⁾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가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국가별로 점자 체계가 상이하여 해외 수출·수입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자 등의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권장사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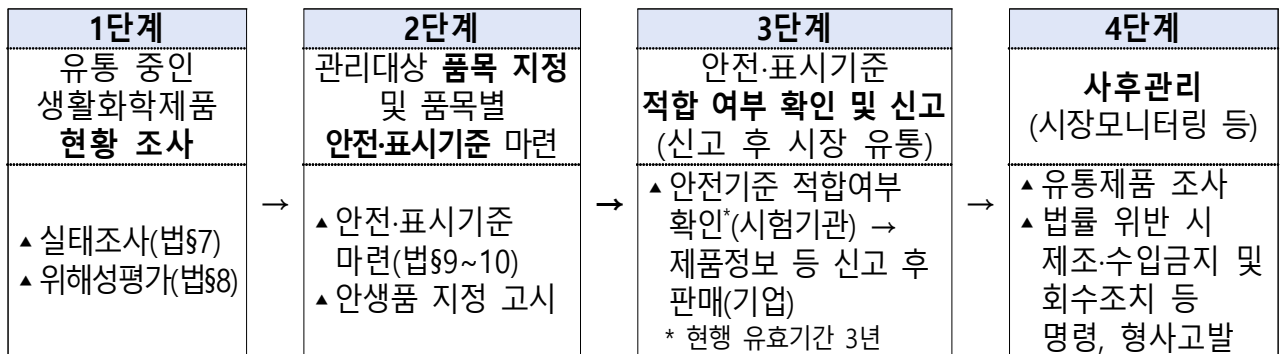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 (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지정·관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에 43개 품목 지정·고시

<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



※ 제품의 형태, 용법에 따라 위해도가 다르게 평가되어 단일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대상으로 관리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품 유해성·효과 등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지정현황) 세정제, 방향제 등 총 43개 품목(신고대상 35개, 승인대상 8개)

- 법 시행('19) 이후 품목 수는 23%, 제품 수는 379% 증가('25.11월 기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현황 >

1. 세정제	16. 방향제	31. 초
2. 제거제	17. 탈취제	32. 습기제거제
3. 세탁세제	18. 물체 염색제	33. 인공 눈 스프레이
4. 표백제	19. 물체 도색제	34. 공연용 포그액
5. 섬유유연제	20. 자동차용 워셔액	35. 목재용 보존제
6. 광택 코팅제	21. 자동차용 부동액	36.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승인
7. 특수목적코팅제	22. 인쇄용 잉크·토너	37.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8. 녹 방지제	23. 인주	38. 보건용 살충제 승인
9. 윤활제	2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39. 보건용 기피제 승인
10. 다림질보조제	25. 미용 접착제	40.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승인
11. 마감제	26.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41.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12. 경화제	27. 살균제	42.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13. 접착제	28. 살조제	43.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14. 접합제	29. 기피제	
15. 경화촉진제	30.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 및 제품 수 추이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11월
품목 수	35	35	39	43	43	44	43*
제품 수	50,178	99,902	193,899	213,623	213,898	205,052	190,121

* 총 44개 품목에서 “문신용 염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 이관(‘25.6.14~)

- (안전기준) 소비자의 제품 사용·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세 기준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 설정
- ①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②용기 및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③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기준 예시 >

구분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세탁세제	염화비닐 등 6종	전인산염	머스크 케톤 등 18종
섬유유연제	벤젠 등 12종	폼알데하이드(전 제형 75 mg/kg 이하) 등 14종	개미산(전 제형 10 % 이하) 등 10종

- (표시기준) 국내 판매 시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명, 용도 및 제형, 성분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 번호 등 표시사항 기재
- 마크 표시(의무)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그림기호 표시(권장) 도입

안전기준 확인 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그림기호(예시)	
			
유색	단색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참고자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e-라벨 활용(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e-라벨 적용 개요

- 생활화학제품 e-라벨이란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23개) 중 필수 10개 항목만 용기·포장 표시면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e-라벨(QR코드, 기후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연계)을 통해 제공

[별표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1. 공통 표시사항 23개 항목 (제품 용기·포장 표기)	용기·포장 내 필수 표시사항	e-라벨을 통한 표시사항 표기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연계)
1. 품목 2. 제품명 3. 용도 4. 제형 5. 제조연월 6. 유통기한 7. 중량·용량·개수·패수·크기 8. 어는점 9. 액성 10. 표준사용량 11. 효과·효능 12. 제조자·주소·연락처 13. 판매자·주소·연락처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15. 수입자·주소·연락처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19. 사용방법 20. 사용상 주의사항 21. 응급처치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1. 안전기준 마크 2.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3. 품목 4. 제품명 5. 제조연월 6. 용량, 중량, 개수 등 7. 제조자, 연락처/수입자, 연락처 8. 사용시 주의사항(필수문구) 9. 응급처치(필수문구) 10.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제품 필수 표시사항	1. 품목 2. 제품명 3. 용도 4. 제형 5. 제조연월 6. 유통기한 7. 중량·용량·개수·패수·크기 8. 어는점 9. 액성 10. 표준사용량 11. 효과·효능 12. 제조자·주소·연락처 13. 판매자·주소·연락처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15. 수입자·주소·연락처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19. 사용방법 20. 사용상 주의사항 21. 응급처치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e-라벨 표시사항
제품 필수 표시사항		e-라벨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e-라벨 적용(안) >

**제품 필수 표시사항 23개
→ 10개로 축소 +
세부정보 e-라벨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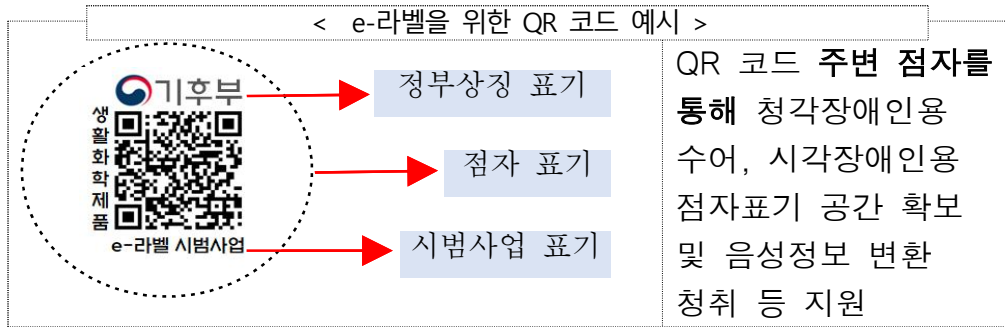
The diagram illustrates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23-item label on a product bottle to a simplified 10-item label. A hand holds a smartphone displaying the e-label,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including safety instructions, usage, and contact details. The e-label is linked to the '초록누리' (Green Nuri) portal for further information.

- 표시면은 안전확인마크 인근, 스캔 용이한 위치에 부착(탈락·훼손 방지 고려)
- QR코드의 발급은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를 통하여 가능하며 소비자는 QR코드 스캔으로 초록누리에서 전체 표시사항 열람(타 채널 연계 금지)

□ e-라벨 및 표시도안 예시

○ e-라벨 표시방안 및 사이즈(QR 코드)

- ① e-라벨 확인을 위한 QR 코드는 제품신고 완료시,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QR 코드는 인식률을 고려, 최소 사이즈는 (10 × 10)mm 이상
 - ③ 제품 정보는 QR 코드를 활용,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에서 확인
- ※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회적인 연계 금지



○ 제품 표시도안 예시

- ① 제품 표시면 도안 내 QR 코드 삽입
- ② 주표시면 우측 상단 표기(안전확인마크 주변)
- ③ 접합부를 피하고 스캔이 용이한 위치에 표기

